

제 35 차  
이사회 회의록

2013. 9. 13.

한국장학재단

## 제35차 이사회 회의록

### 1. 회의개요

- 회의일시 : 2013년 9월 13일(금) 16:00 ~
- 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24층 대회의실
- 출석이사 : 재적인원 12명 중 8명 참석  
(이사장 1, 상임이사 2, 비상임이사 6)

- (이사장) 곽병선 이사장
- (상임이사) 권광호 상임이사, 김남일 상임이사
- (비상임이사) 서유미 이사(교육부 국장), 김지한 이사(한양대 대학원 교수),  
이길순 이사(신구대 교수), 이영 이사(한양대 교수)  
정선양 이사(건국대 교수),

※ 금만수 상임감사 참석

- 불참이사 : 4명
  - 노형욱 이사, 김용범 이사, 김병주 이사, 이봉화 이사
- 상정안건
  - 보고안건(2건)
    - 제35-1호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 보고
    - 제35-2호 대학생 금융교육 추진 관련 후속 보고
  - 의결안건(1건)
    - 제35-1호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
    - 제35-2호 정관 개정(안)

## 2. 논의 결과(요지)

### □ 개회선언 · 성원보고

-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제3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- 간사(경영기획실장)로부터 성원보고(총 8명 참석)를 받음.

### □ 전차회의 결과 보고

- 간사로부터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 보고를 원안 접수함.

### □ 회의결과

- 보고 35-1호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 보고 : 원안 접수
- 보고 35-2호 대학생 금융교육 추진 관련 후속 보고  
: 원안 접수
- 의결 35-1호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 : 수정 의결
- 의결 35-2호 정관 개정(안) : 원안 의결

□ 보고안건 제35-1호 :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 보고  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정부 조직법 개정('13.3.23)에 따라 이공계 우수장학사업의 소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수탁회계로 분리·편성 보고

- 주요 내용

-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(대통령과학장학금 포함) 예산 (736억원)을 수탁 회계로 분리·편성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중 교육부 사업관련 예산은 남아있음.
- 전년도 관련 예산이 남은 관계로 결산불용액에서 이관액이 생김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접수

□ 보고안건 제35-2호 : 대학생 금융교육 추진 관련 후속 보고

(보고자: 여신관리부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○ 「정관 제7조(이사회) 제3항」에 근거하여 대학생 금융교육 추진 관련 조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함.

○ 주요 내용

- 홍보마인드를 결합하여 금융교육 프로그램 추진
- 금융교육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그동안 금융교육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설문조사까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임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접수

□ 의결안건 제35-1호 :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○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'을 의결 후 기재부·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함

○ 주요 내용

-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 및 부서업무를 기능적으로 연계
- 5대 전략목표, 10대 전략과제에 대한 '14~'18년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'맞춤형 학자금 대출제도 기반 마련'의 '맞춤형'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춘 학자금대출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의미임.
- 목표 지표는 정부 예산 변동을 고려하고 정부 정책 목표 수준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.
- 대출 및 장학 사업 간 통합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고려하는 등 더 큰 시야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다. 논의 결론

- 수정 의결

□ 의결안건 제35-2호 : 정관 개정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학자금부실채권 상각 심의·의결기구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재단 이사회로 변경하고자 함
- 주요 내용
  - 일상적·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채권 상각 심의 기구를 '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'에서 '이사회'로 변경하여 상각실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
  - 정관 개정(안)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|
|--|---|
| 제7조(이사회)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br>1. ~ 13. (내용 생략) | 제7조(이사회)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br>1. ~ 11. (내용 생략)<br><u>12. 구상채권(求償債權)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상각(償却)에 관한 사항</u><br>13. ~14. (내용 생략) |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폐회선언